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95 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정동영·이훈기·서영교

김 현・김 윤・김우영

민형배 • 박홍근 • 윤준병

박홍배 • 차규근 • 김준형

한민수 · 용혜인 · 이용우

김태선 · 이해민 · 전종덕

윤종오 · 신장식 · 조 국

조인철 · 진선미 · 이정헌

민병덕 • 정진욱 • 김현정

복기왕 · 김영배 · 백승아

임호선 • 권향엽 • 박정현

송옥주・이수진・허 영

장경태 · 김남근 · 문금주

이재관 • 이재정 • 박민규

박해철 · 허성무 · 박희승

박용갑・박지원・최민희

임미애 · 이용선 · 강준현

고민정・양부남・황정아

오세희 • 황명선 • 정혜경

김주영 · 노종면 · 위성락

추미애 · 김영화 · 박상혁

김윤덕 의원(64인)

제안이유

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, 고강도 노동,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, 이륜차를 이 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, 현장근무 특성상 기 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.

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,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·운영,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-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다.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·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 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 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 야 함(안 제9조).
- 라.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·평가하여야 하며, 우편집배관 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마.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, 직업교육훈련,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(안 제13조 및 제14조).

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우편집배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집배업무"란 우체통·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의 수집, 우편물의 이 배달 및 그 밖에 우편물의 수집·배달과 관련된 부대 업무를 말한다.
- 2. "우편관서"란 우체국, 별정우체국 등 우편집배관을 사용하여 우편 물을 배달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관서를 말한다.
- 3. "우편집배관"이란 우편관서에 소속되어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우편집배관 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우편집배관의 배우자
- 나. 우편집배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5. "복지시설"이란 우편집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우편관서의 구내식당, 매점, 휴게실
 - 나. 보육시설
 - 다. 수련원, 연수원
 - 라. 우편집배관 및 우편집배관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
 - 마. 그 밖에 우편집배관의 복지를 위한 시설
- 6. "체육시설"이란 우편집배관의 체력을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우편집배관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편집배관의 신체적 ·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는 집배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우편집배관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⑤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 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우편관서의 장의 의무) ① 우편관서의 장은 소속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우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 본계획에서 정한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 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6조(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
- 2.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·조사에 관한 사항
- 3. 소요인력측정 기준,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 우편집배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집배업무환경측정, 특수건강진단, 정밀건강진단 및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
- 5. 집배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우편집배관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우편집배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(이하 "복지시설등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7.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우편집 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환경측 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

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) ①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(이하 "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5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.
 - 1.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2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
 - 3.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
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사항

- 2.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,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3장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

제9조(우편물의 이용 제한·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등) ① 우편관서의 장은 「우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·재해 등 사유로 인하여 소속 우편집배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

를 할 수 있다.

- ②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물량의 일시적인 급증, 인력부족 등의사유로 인하여 소속 우편집배관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안전에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집배업무의 일부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·집배업무의 일부 정지, 제2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유예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집배업무환경측정)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집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과 질병요인으로부터 우편집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업무환경을 측정하여 분석·평가(이하 "집배업무환경측정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- ② 집배업무환경측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 - ③ 그 밖에 집배업무환경측정 및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의 구성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특수건강진단 등)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·유지를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우편집

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우편집배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우편집배 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편집배관 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 단 결과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우편집배관에 대하여는 보직변경,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.
- ④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정밀건강진단의 시기·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역학조사)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(이하 "역학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우편관서의 장과 우편집배관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역학조사의 방법, 대상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

괄기관의 장이 정한다.

- 제13조(복지시설등의 설치·운영)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 배관의 복지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복지시설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우편집배관에게 그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과 우편집배관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복지시설등의 설치·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)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사회적응교육 및

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우편집배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,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